

덴마크의 工業所有權制度



金正容
〈特許廳 行政事務官〉

① 特許制度의 概要

덴마크의 特許法은 1958년부터 實行해 오던 舊特許法을 1967年 12월에 改正公布하여 1968年 1월부터 施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나라 制度上의 特許要件은 産業上 利用될 수 있는 發明을 한 사람이거나 이것을 承繼한 사람은 出願으로 그 發明에 관한 特許를 받을 수 있고 業으로서 그 發明을 실시할 獨占權을 取得할 수가 있다.

그러나 發明의 실시가 善良한 風俗 또는 公共의 秩序에 反하거나 動, 植物의 品種, 栽培, 飼育에 관한 本質의인 生物學的方法에 관한 것은 特許를 받을 수가 없다.

출원의 新規性은 출원전에 公知되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文書에 의한 記述, 口頭陳述 등으로 公衆이 알게 되어 있는지를 判斷하여 決定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1960年 12월 9일에 商標協定을 締結하였고 1963年 10월 11일에는 特許에 관한 相互保護協定을 체결하여 서로 內國民待遇를 해 주고 있다.

이나라에서는 출원전에 이미 外國에서의 保護出願에 기재되어 있는 發明에 관한 特許출원은 출원인의 主張에 따라 外國의 출원과 同一하게 看做하여 優先權을 認定하고 있다.

또한 이나라의 特許制度는 挪웨이, 스웨덴, 핀란드와의 協力에 따라 3個國 가운데 1개국에만 特許출원을 하더라도 3개국에 동시에 効力を 發生하는 이른바 노르딕特許出願制度가 있다.

이러한 노르딕특허는 국내에서 賦與된 通常의 특허와 똑같은 効力を 갖는다.

이나라의 特許權存續期間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7년이다.

② 特許制度의 運用과 特徵

1. 特許出願 및 審査

가. 出 願

特許出願은 特許賦與機關인 特許登錄廳에 書面으로 提出해야 하며 출원서는 필요한 圖面을 포함한 發明의 明細書 및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을 正確히 記載하고 아울러 特許請求範圍도 포함시켜야 한다.

출원서에는 發明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고 發明자 이외의 사람이 특허를 출원했을 때는 출원인은 그 發明에 관한 權利를 證明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출원서는 所定의 出願料를 納入하는 것을 要件으로 하고 있다.

출원가운데 둘 이상이 서로 獨立되어 있는 發明에 관해서는 하나의 願書에다 출원해야 하고 출원인의 希望에 따라 출원을 分割할 수도 있다.

또한 출원인이 國內에 居所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에 관한 一切의 事項을 출원을 代理할 수 있는 代理人을 국내에 居住하는 者중에서 選任해야 한다.

특허출원의 提出時, 또는 이미 제출된 출원서류에서 明瞭치 않은 出願對象의 變更(즉 要旨變更등)을 하는 補正은 認定하지 않는다.

나. 審 査

출원인이 출원에 관한 諸規定을 遵守하지 않거나 特許賦與機關에서 특허출원의 受理에 관한 障害事由를 發見했을 때는 출원인에 그 要旨를 通知하여 一定期間 동안 意見書 또는 補正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원인이 指定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指摘된 缺陷을 除去하도록 措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출원은 保留하고 출원인에 그 요지를 통지하게 된다.

다만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의 經過後 4個月以內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적된 결함을 補完하는 조치를 취하고 所定의 續行手數料를 납입했을 경우에 限해서

그 출원의 審査는 繼續된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뒤이라도 오히려 특허출원의 受理에 관한 障害事由가 있거나 그 위에 출원인이 그 장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機會가 주어질 경우에 그 출원은 拒絕된다.

한편 출원에 關係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이 아니면서 自己가 그 권리를 갖을 수 있다는 요지를 特許賦與機關에 주장하는 자가 있을때 그 事件이 不明確하다고 인정이 되면 특허부여기관은 그 主張者에 대해 指定期間內에 訴訟를 提起하도록 命令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이 法院에 繫爭되고 있는 동안 그 소송이 完決될때까지 특허출원의 審理를 中止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출원이 合當하고 특허를 부여하는데 缺格事由를 發見할수 없을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수리되고 아울러 公告된다. 특허출원이 수리된 이후에는 特許請求範圍의 擴張은 할수없게 된다.

특허출원이 수리된 요지의 통지가 있은후 출원인은 소정의 印刷費를 납입해야 하고 이를 납입치 않으면 그 출원은 보류되거나 기간경과후 4개월이내에 追納하면 그 출원의 심사는 續行된다.

다. 出願公告 및 異議申請

特許廳은 公衆에 異議申請의 機會를 주기 위해 인쇄비가 납입된 출원을 公開하고 이를 公告한다.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書面으로 특허청에 提出해야 하고 출원을 공개와 동시에 특허청은 그 발명의 明細書, 特許請求範圍, 出願人 및 發明者를 기재내용으로 하는 인쇄물을 發刊하게 된다.

출원이 공개된날이후에 그 출원에 관한 모든 書類는 누구든지 알수있도록 공개해야 하는데 優先權을 주장한 출원은 優先日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그 출원서류는 누구든지 알수있도록 공개시키고 있다.

異議申請期間이 경과한후 그 출원을 특허할 것인지의 與否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심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說明한 方式審査의 規定을 適用하고 있다.

또한 이의 신청이 있을때는 이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節次가 있다.

라. 審判請求

출원인이 특허청의 最終決定에 不服했을때는 審判을 청구할수가 있고 이의신청이 適法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원에 特許賦與의 결정이 내렸을 때 그 이의신청인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의신청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取下하더라도 심판을 해야할 特別한 理由가 있으면 이에 불구하고 심판에

붙이게 된다.

심판의 청구는 특허청의 결정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特許審判委員會에 제기해야 하고 심판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審判請求料를 내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却下된다.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上級行政機關에 上訴할수는 없다. 다만, 심판위원회에서 내린 특허출원거절의 審決에 대해서는 그 심결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法院에 訴訟를 제기할수는 있다.

마. 特許賦與 및 登錄

특허출원을 容認한다는 요지의 결정이 法的効力を 갖게 되었을때 특허를 부여하며 이때 이 요지를 公告하고 特許證을 交付한다.

그리고 공중이 알 수 있는 狀態에 놓여진 출원이 最終的으로 거절이나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公高하도록 되어 있다.

부여된 특허는 특허청이 保管하는 特許原簿에 登錄되고 누구든지 특허원부를 閱覽하거나 출원서류의 複寫, 所屬書類의 入手가 可能하다.

2. 特許權의 實施許諾 및 移轉

특허권자가 業으로서 他人에게 그 발명을 實施할 권리를 許諾했을 경우에 實施權者는 特別한 約定이 없는 限 자기의 실시권을 第3者에게 移轉할 수가 없다.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실시허락하는 것은 어느쪽의 當事者의 신청에 따라 특허원부에 등록하고 원부에 등록된 실시권이 消滅되었음이 證明되었을때는 그 실시권의 등록은 抹消된다.

한편 특허에 관한 소송은 특허원부에 특허권자로서 등록된 자에 대해 제기되고 또한 특허청에서도 등록된 자에게 通知書를 發送하고 있다.

특허가 부여된지 3년을 경과했거나 그 특허출원후 4년이 경과했음에도 그 발명이 國內에서 充分한 規模로 실시하지 않았을때는 國內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強制實施權을 取得할수가 있는데 다만 그 발명의 실시가 없었다는 正當한 理由가 있을때에 한한다.

또한 타인의 특허권실시에 依存하고 있는 발명의 實施權者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強制實施權을 취득할수도 있고 公益上 크게 필요가 있을때 업으로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도 그 특허권에 관하여 강제실시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강제실시권은 그 권리를 실시하는 事業 또는 實施豫定인 사업과 함께 제3자에 이전할수가 있다.

강제실시권의 許與는 코펜하겐海事·商事法院을 第1審法院으로 하여 발명이 실시되는 범위, 그 對價, 其

他強制實施許與의 條件을 함께 가름하고 있다. 특별한 事情에 따라 變更의 需要가 있을때 법원은 어느 當事者의 청구에 따라 강제실시의 허여를 撤回하거나 강제 실시허여에 관한 새로운 조건을 정하기도 한다.

3. 特許侵害의 責任 및 補償

특허로서 부여된 獨占權을 故意로 侵害하거나 이것을 默認한 자에게 罰金を課하고 惡質者에게는 3개월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侵害罪의 提訴는 被害者의 告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고의 또는 過失로 특허권을 침해한자는 그 발명에 대한 適正한 대가의 支拂 및 그 침해에서 發生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지우고 있으나 그 金額은 특허권침해로서 얻은 利益額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법원은 특허권을 침해한 物件을 소정의 方法으로 改造, 廢棄 또는 대가의 지불을 命하며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법원은 製造物, 器具, 設備,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 및 조건에 따라 自由로히 處分하도록 許可해 주기도 한다.

③ 商標制度의 概要

덴마크의 現商標法은 1936년에 制定한 舊商標法을 廢止하고 1959년 6월에 改正公布하여 1960년 10월에 施行하였는데 挪웨이를 비롯한 스웨덴, 핀란드 등 이른바 스칸디나비아諸國은 1951년에서 1961년 사이에 각각 舊法을 폐지하고 新法을 시행하고 있다.

이나라의 상표법은 상표등록에 관해서는 先願登錄主義를 採用하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록치 않더라도 상표권의 成立을 인정하고 있다.

外國人에 대한 工業所有權의 享有는 同盟與否에 不問하고 그 權利能力을 인정하고 있으며 덴마크國內에서 사업을 營爲하지 않으면 原則的으로 本國商標登錄에 根據하여 외국인은 등록출원이 된다.

다만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는 外國商標權者는 덴마크특허청에 그 選任한 代理人의 등록이 없으면 일단 원부에 기재된 상표등록은 職權으로 말소하게 된다.

상표법의 要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은 先出願으로 등록이 發生되나 著名商標

는 등록없이도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先使用者에 우선한다.

2. 立體商標 및 서비스마크도 상표권에 의한 保護對象이 되고 있다.

3. 외국인이 本國에서 상표의 사용을 開始하고 이어서 덴마크에 그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그 사이에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을 했더라도 본국에서의 先使用者임을 이유로 상표권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4. 출원은 商業大臣의 명령으로 정한 商品區分에 따라 또는 그 이상의 數를 포함한 商品을 지정하여 출원인의 姓名, 名稱, 住所, 事業種類 및 商標를 表示, 出願料를 納入해야 한다.

5. 덴마크 國內에서 開催된 博覽會의 出品物에 사용된 상표는 展示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중간에 타인이 사용 또는 출원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6. 登錄適格性이며 不登錄事由에 該當되지 않는 상표는 출원공고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7. 출원이 방식에 違反되거나 불등록사유에 해당되면 출원인에 拒絕理由를 통지하고 指定期間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8.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때 등록이 결정되고 商標公報에 登錄公告한다. 물론 출원의 거절도 상표공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9. 거절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급대신 또는 6개월 이내에 법원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다.

10. 등록상표의 商標權存續期間은 登錄日로부터 10년이며 更新延長할 수가 있다.

11. 상표등록의 取消訴訟은 利害關係人 또는 特許廳長이 제기할 수가 있다.

12.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商標使用을 허락할 수 있고 이때에 그 요지를 등록해야만 한다.

13. 등록의 말소는 법원의 判決, 更新登錄先願이 없을때, 外國商標權者에 의한 代理人選任이 없을때 등에 이루어진다.

14. 聯合商標 및 防護商標制度는 없다.

15.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 법원은 그 行爲를 중지하도록 청구하고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운다.

내가 아낀 한등 전기 나라살림 보탬된다